

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3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

상정된 안건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3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3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3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3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3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3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3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3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3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3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3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3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3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3
 17.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3
 1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3
 1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3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3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3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3
 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3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3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3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3
-

(11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강선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1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적이 미진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쪽 맙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이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인권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교육에는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법적 근거는 없는 반면에 이러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 이수를 근거로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임의적 법 집행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명확히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3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적 지급 보류 상태를 해제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

록 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 보류를 취소하여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의5제1항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님 안은 후단을 신설하여 지급 보류 처분 이후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침익적 행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광석** 이 사안은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소위에서의 논의 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항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차등 없는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그 설립이 강제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지자체 재정 부담 등과의 관계에서 국고보조의 중대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보조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위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공공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할 경우 현행법 제11조 1항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한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1항을 수정하여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자체 설립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은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개정안 제29조에서 사업 수행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11조 제2항 1호는 현행과 같이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개정안 제29조는, 개정안에서는 임의적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 지원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더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그 취지로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의 시군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각각의 개별 시군구의 재정 상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우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의무적 설립을 이번에 추진하고 그 운영 상황을 검토한 후에 추후에 다시 시군구에 대한 것은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첫 번째, 운영 의무화는…… 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 사서원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의 설립 여부는 지자체의 타당성 검토 후에 설립하게 되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규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번의 두 번째는 우선위탁 규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쪽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11조 1항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공개 방식인데 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신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군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차관님, 지금 의무 조항 부분이요. 시도에 설치하는 의무조항 부분이 지방출자 관련한 법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법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하는 법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따른 의무화 관련한 부분이랑은, 제가 볼 때는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반대하시는 것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7조에 따르면 그게 의무화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또 사서원법 9조에 따르면, 9조가 보니까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기관의 법률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게 되면 또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주민 복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출연기관의 법보다는 앞서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또 사회서비스원법 9조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저촉은 받게 됩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의무화를 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이걸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15개가 설치가 돼 있고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장도 17개 시도에 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시도, 없는 데서는 그 서비스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17개 시도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생각은 뭐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사실……

○남인순 위원 경북에서도 검토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님 사실은 법적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해산을 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차관님, 이게 수미일관하셔야지요. 그때 복지부의 입장이 뭐였어요? 그때 서울시가 그거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걸 지도하려고 했었잖아요, 공문을 받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지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도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지도의 방향은 뭐였냐 하면 유지하라는 거였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유지하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지도……

○남인순 위원 그때 어쨌든 서울시의회가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복지부가 지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지도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이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이걸 반대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방출자출연법과는 사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위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기관,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같은 걸 내셨어요. 지방자치가 하는 부분과 국가가 설치하는 부분을 차이를 둬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수정의견도 하나의 단계적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사실은 어쨌든 시군구가 설립하는, 국가나 시군구가 설립하는 것 중에 직접 직영하는 거는 전체 1%도 안 돼요. 설치는 10%인데 직영하는 건 1%도 안 되고 최근 경향은 오히려 직영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게 줄어든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직영을 했을 때 일정하게 공공이 설치해서 가는 부분을 어쨌든 좀 표준화하고 선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위탁하는 부분들을 저는 전문위원이 수정안 내신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구 사회서비스원도 설립할 수 있다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할 때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을 다 민간만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사각지대의 틈새돌봄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미 광주나 이런 데서는 시군구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광산구에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만, 모든 데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정말 이게 전 정부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때 지금 보건복지부차관이 이 사업, 법 통과할 때 계셨던 분이세요.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전체 공무원들은 그렇게 정권의 성격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이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질문한 것에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셨던 행정지도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산을 하는 시점이 5월 22일이겠습니다. 23일 날 의결을 했는데요. 그 전날 제가 서울시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 사유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돼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의 여러 건을 살펴보고 해 봤더니 사실은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울시사서원 그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사서원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 대책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노조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제가 안 했던 것이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우선위탁 규정에 대해서는 옛날에 22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우선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21년 4월 28일 같은 경우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요. 사실 이번에 또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의 기피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위탁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하나 또 28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시군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군구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서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의 사서원은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아래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도 사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시군구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해 놓고, 역할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규정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차관님, 시군구협의회에서도 지금 수용 의견이 왔잖아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그 얘기가, 뭘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요. 광역시는 좀 달라요. 그런데 농어촌이 같이 있는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갖고는 일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리적으로 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합재가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전혀 파악이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거리적으로 이동이 먼, 종합재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하고 양평이 있으면 거리를 종합재가 지원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많이 올라왔던 얘기 중의 하나예요. 그런 데는, 도 단위가 있는 데서의 자치 시군구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을 둘 수 있도록 정도만 해 주면 그러면 지자체 여력이 되는 데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왜 복지부가 막습니까,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건데?

그리고 분명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시군구협의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통합돌봄지원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남인순 위원 제가 복지부가 하려는 건 여러 번 진짜 많이 협력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진짜 반대, 어떤 이념적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 건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전문기관 위탁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우리 법체계상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또 중앙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업무 내용이 법적으로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둘 수 있다,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담겨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차제에서는 중앙이라든지 또 시도라든지 시군구의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시군구에서 여러 가지를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임의라든지 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차관님, 제가 하나하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법이 21대 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입법이 됐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였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시행이……

○**김미애 위원** 이 7조가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것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때인데요. 그것 시행 일자를……

○**김미애 위원** 제가 아는 게 정확한가? 21년 9월에 공포되고 6개월 뒤니까 22년 3월부터 시행된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맞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제정 당시부터 의무규정으로 안 하고 재량규정으로 했던 이유는 뭐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도, 그 법이 지금 보면 7조하고 9조하고 서로 이렇게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7조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돼 있고 출연기관이 되게 돼 있고 9조에 보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조 보면 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에 관한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할 때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출자지원법에 가게 되면 이것은 위원회를 통과해서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의 주요 사항은 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임의적으로 자체가 결정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찬반 논쟁이 심했는데 저는 그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 야간·휴일 뭐 이런 데 긴급돌봄 이런 경우인데 이 취지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대표적으로 경남이나 대구나 그런 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하지도 않은 데도 있고 해산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법에 보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종사자의 질 높은 측면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법 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 말씀을 주신 지역단위의 보다 구체적인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까? 실태조사를 한 거 정리는 된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정도로 정리는 해 놨어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저희가 사실은 시군구 공급에 대한 자료는 다 그때 말씀 주신, 법안소위 때 나온 이후에 자료는 드렸고요.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하나하나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입법이 훌륭하지 않은 입법이 없어요. 입법 모든 법마다 1조 목적이 이상한 게 없습니다.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입법 목적대로 현장이 작동하는지 현장을 가 봅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국회의원이 이런 데도 옵니까?’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던데 다 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훌륭한 법을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현장이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요자가 더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종사자들도 더 힘들고 나중에는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태조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도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담보가 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까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올해 지하에, 공동주택인데 다른 걸 개조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데 10명도 잘 모으기가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훨씬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실태조사를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심사 때도 하고. 그리고 잘된 데는 그 지역은 특별히 왜 잘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잘되도록 해야 되고.

입법이 처음부터 완결성을 아무리 높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개정안도 당초 제정했다가 개정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는 지켜보면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시점에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돼 있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저는 법은 또 누더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바로 이거를 재량사항에서 의무화하기에는 저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군구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뭔지 또 그 아래 하위까지 가는 데는 적합한지, 시도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전문위원회에서도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하지 않고 확대하면 아마 다 반대할걸요. 그런데 이거 지원하려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 추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 기재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님, 제가 이 정부 가만히 보면, 이거 복지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복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고 지난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가 됐고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께서는 좀 믿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 하는 태도를 보면 간병비 급여화도 그렇고 상병수당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뭘 좀 열심히 한 것 같으면 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시범사업도 더 늘려야 되고…… 1년, 2년 계속 시간을 끌어요.

지금 현장에 복지 사각지대에 당연한 돌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민간서비스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 수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그 요구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렇게 나이브하게 복지부차관이라는 분이 뭘 알아봐야 되고 뭘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전혀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뭐가 급한지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급하지 않다, 시군구까지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법적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진 위원**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움직이는 거지 법 없이 공무원들이 일합니까?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향

적인 검토한 의견들을 주셔야지 소위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얘기만 가지고 오늘 그냥 계속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참 답답한데요. 이게 서울시사서원을 보면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비용 저효율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광주의 경우에 보면 돌봄서비스가 지금 시민 모두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것은 설립·운영 의무화 조항에서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서울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주로 안 되는 데만 의견을 듣고 광주시·경남도 이런 잘하고 있는 데는 의견을 안 듣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설립 의무화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시군구의 의견은 다 조회는 한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우수사례도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넣으셨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4페이지에서 설립 의무화 보면 지금 대구의 경우도 4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서비스원을 출연을 했고 울산의 경우도 2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서비스원을 출연했고 이런 건 좋은,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 내용은 신중검토로 의견을 내고.

우선 확인을 해 봅시다. 복지부에서는 이 사회서비스원이 순기능이 있고 확대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순기능이 있다는 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서비스로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의무규정으로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있는 것이 아직은 타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뒀더니 서울서비스원같이 그렇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재단을 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단체장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의무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강제해서 돌봄 수요가 많은 곳에서 충분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복지부의 원래 고유의 업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 건을 보면 사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편으로는 의무화를 하기 힘든 것도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 5월 달에 해산까지 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걸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면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정치적인 그런 관계없이 정말 긴급보육이라든지 취약보육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잘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걸 재의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체장의 이런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재량권의 영역에 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되는 데 의견들은 안 듣고 안 되는 데 의견만 들어 가지고 지금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선우**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오늘 우리 차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오늘…… 지난번 토론할 때까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입장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아닙니다.

○**전진숙 위원** 바뀐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또 질문할게요.

사회서비스원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많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 건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 게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 서영석 위원님도 광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 말씀드리면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 내려가서 동 단위까지 있는 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담당의 공무원들이 곳곳에 제대로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기억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사회서비스 영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6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전달체계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천차만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영역이 확대되고 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방식으로 가고 더 진행을 해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냥 사회서비스 영역을民間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알면 그 의도로 비쳐집니다. 그건 아니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건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이 논의를 지난번, 이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이 방식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각자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을 통과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서사원이 폐지된 게 고비용 저효율의 이유가 큰데 국가가 하는 돌봄은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비용 저효율일수록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 들은 것 중에 잘 안 되는 의견 수렴한 게 많은데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아져야 되고 더더욱 존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께서 아까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봤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었지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실태조사하신 것 받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실태조사인데 달랑 두 가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숫자, 이용자 숫자, 끝이에요.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조차 없고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만족도 없고요. 기타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수요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필요한 인원, 인구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 퍼센티지조차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회복지시설 개수 세고 거기 오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용자들 세고 끝이에요. 이게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위원님께 드린 것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선우** 시설 수랑 이용자 숫자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보니까 2024년 7월 사회서비스 운영 현황 해서 사업 운영 현황하고 종합재가센터 현황 또 민간·지역 산하 종사자 현황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만족도 레이팅한 그런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만족도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전체 서비스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데,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가 이용을 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하신 것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는데 시군구가 뭐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시군구에서 뭘 할지는 사실은 지금 정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근거로 정하실 거예요? 뭐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사회서비스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디테일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최대한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가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중검토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반대의견을 내시는데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정부안을 내실 생각은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은 서울시라든지 그걸 좀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5개는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그런 상태고요. 서울시는 있다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해산한 그런 상태이고 대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러면 정부가 관련돼서 정부안을 내실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사실은 이게 의무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거거든요.

○**소위원장 강선우** 아까 서울시가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무슨 노력 했습니까, 서사원 폐지 안 하려고? 이게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일이에요? 폐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아니, 폐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왜냐하면……

○**소위원장 강선우** 폐지의 움직임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서울시사서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말씀드

리면 고난도라든지 주말·야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제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시가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회가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감사를 가 가지고 감사 갔다 온 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서울시사서원 폐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서원에 사서원장으로 가신 분이 오세훈 시장 관계자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사서원 폐원을 위해서 노력하셨지요. 가서부터 예산 100억씩 하던 것 줄였고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만들고 평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평가의 내용은 21년도 평가예요. 계속 복지부가 서울시사서원이 효율이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비용에 저효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평가의 기준이 21년도였어요. 22년도, 23년도는 그게 다 개선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산입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그게 너무……

사실 서울시사서원 폐원 과정에서 저는 그때 분명히 차관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이 되어서야 개입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도 제가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서울시사서원 폐원에 대한 팩트에 대한 것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폐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회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호소를 했어요, ‘제발 폐원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모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 폐원 과정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간사 간에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대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복지부한테 정말 너무…… 그래도 복지부는 최소한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반하는 그런 의견을 여기에 냈어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 6만 개 넘잖아요. 그중에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1%가 안 돼요. 그런데 사서원 직접 운영하는 게 늘어나면 민간이 위축될까 봐, 99%가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이 위축될까 봐,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래도, 어린이집도 그렇고 육아종합센터도 그렇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은 여야·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1%밖에 직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 과도하게 많이 운영할까 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복지부의 이 판단이 저는 복지부가 어떻게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나? 이게 복지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면 국가가 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가

뭐 하려 합니까, 민간이 알아서 다 할 텐데?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조금 투자해 가지고 많이 벌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저도 강선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비용 저효율이어도 거기에 위법 사항이나 심히 부당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 개선점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

하나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자체에서 지금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설립,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권한이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고효율,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고난도 또 긴급하게, 주말에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실은 해산을 한 것인데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서울시가 왜 해산을 했느냐라는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분들을 불러서 왜 하게 됐는지를 저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김미애 위원 아니, 국회에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통해서 됐던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국회가 다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러면 저는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해야 되는 데 방점이 있어요. 잘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태조사를 22년부터 했다면 22년 치가 나와야 되고 23년 치가 나와야 돼서……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잘하는데 있어요, S등급 A등급 받은 테. 그리고 정책 성과도 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90.9면. 그리고 고난도 사례나 민간 곤란 사례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했고 서비스 질 제고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는 잘한 곳이고 잘 안 한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시인데 잘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책임지고 자치단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할 권리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시도 사서원의 설립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시·

도지사가 사실은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2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 해서 감사가 된 것이고요.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되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 건을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했더니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재의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이 해산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걸 따라서 공공돌보미를 만들어서 지금하고 별도로 10월 달인가 해 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일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상황을,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걸 좀 알고 싶으시면 정말 서울시 거를 좀 쳐다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핵심은 서울시에 이번에 있는 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파악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제가 지난 11월 말에 서울시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서영석 위원 차관님, 차관님 말씀이 좀 무책임해 보여요.

사회서비스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서울시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한 사회서비스원이 좋다고 생각해서 15개나 확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을 잘 못 한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거지 서울시 자기 책임을 안 지고 그것을 폐쇄한 게 그게 잘한 거예요?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좋다고 다 전국에 확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부추겨서 서울시가 폐쇄한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위원님,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해산을 한 상태에서……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을 보고 전국에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비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다시 의무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백혜련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미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페이지 보면, 경영평가 결과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정말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용자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에서 90.9점이 나올 정도의 높은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있을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전국에 사실은 설파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 하는 일이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해서 뭐가 얼마나 다를까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거의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쇄가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또 평가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이렇게 챗바퀴 돌 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위가 연내에 또 다시 한 번 열릴 수 있다면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더 조율해 보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소위가 오늘밖에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수결로라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차관님, 복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방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부실한 것도 아니라는 데 기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그리고 양보를 해서 운영이 부실했다면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실하니까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부실을 이유로 지금 폐지를 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사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설립이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모두 충분한 상황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를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 필요하면 다수결을, 표결을 해서라도 빨리 확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점심 먹고 그다음에 2시 반쯤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래서 이 논의를 이어 가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선우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논의하던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논의를 좀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점심시간에 좀 고민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또, 이게 오늘 지금 세 번째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랑 또 여러 번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계속 이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력을 해 주셔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낸 개정안에서 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위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국가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공개경쟁의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11조 1항을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1조 2항 1호에 신규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 제한조항을 없애고 그거를 현행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조의2에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의 사회서비스 하는 시설의 이런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수준을, 지금도 공공과 민간이 하는 것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4조 4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기의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넣어서 강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는 계속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자치사무 저기로 되어 있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사실은 해산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위탁에 관해서는 일단 11조 1항이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있던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것도 지금은 대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것은 법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건 모두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의견 추가로……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등 내신 의지 얼마나 확고하신지 또 대한민국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그런 열정 저도 상당 부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가 굵직하게 들어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답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할 테니까 보시고 추가하실 것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안상훈 위원** 첫 번째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고도화에서 공급 확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급을 좀 분해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있을 때 우리가 재정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것은 재정적 책임성을 정부가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을 구성하는 게 재정에 더해서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 등등 국내 자료가 전반적으로 별로 없다 그러셔서, 제가 알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건 거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제일 못 하는 게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내부경쟁론 들출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같은 돈을 가지고 서비스를 창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라면 민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공급까지도, 생산까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약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조직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재정적 책임성이 더해서 공급, 생산이라는 면의 공급까지도 다 공공부문이 맡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축효과도 우려가 되고요. 그것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안상훈 위원** 두 번째, 설립 의무화 관련해서…… 지자체 사무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설립 의무화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시작한지도 지금 반이 지났고 사회서비스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관한 어떤 제대로 된 모형이 도출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탓은 거기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지금부터라도 부디 해외 사례 또 지금 제대로 하셔야 될 국내 실태조사 이런 것들 좀 하셔 가지고 한국형, 우리한테 딱 맞는 최적화된 사회서비스 확대·고도화 모형을 먼저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것은 민간이 하고 어떤 것은

공공이 하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가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이념적으로 이 내용이 자꾸 접근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것은 복지부에서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질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답변, 다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왔고 여러 차례,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 따른 입장이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 법안 발의하신 남인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수정안을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수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정안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 수정안 전에 잠깐 제가 질의 좀……

○**소위원장 강선우** 예,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차관님, 보시면 김선민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주요 골자는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화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경북하고 서울이 없습니다. 경북은 원래 없었고요, 서울은 있다가 해산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서울은 어렵게도 없어졌지만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생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이름이 굳이 사회서비스원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없는 데가 경북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경북입니다.

○**서명옥 위원** 경북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경북하고 대구가 특별자치도로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대구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통합이 곧 조직개편이 되면서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사회서비스원을 설치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만 경북에서도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지원 센터를 한번 가 본 적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상황을 보고 했더니 나름 열심히 계획은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옥 위원** 예, 그렇지요? 서울시는 항상 모든 사업에서 선두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보건 업무를 사실 중앙정부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뭐 치매안심센터랄지 모든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지금 없지만 조만간 특별자치도 조직법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려면 저는 제대로, 어차피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 이행되는 것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서비스를 시도에 꼭 의무화해야 된다는 법은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급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게 2022년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22년 3월 24일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3년이 채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자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실태조사는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운영 상태는 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해 보고 난 뒤에 그 실태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내년부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관리 감독도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이후에 그때 그 실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방 출연기관도 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도 그런 것이고 또 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출자지원법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위원회에서 재량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서명옥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복지를 잘 디테일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입법화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법 9조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저는 입법과 절차를 가장 중시해야 될 국회에서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저는 아무리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절차·과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저도 질의……

○**소위원장 강선우** 저희가 사실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지금 앞에 놓인 수정안 관련된 의견이 아니면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안 관련입니까?

○**김미애 위원** 예, 수정안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수정안 관련 의견만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법안소위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축조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아까 소위에서 세 번째 심사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사고.

이것이 21대 때도 상당한 논쟁을 거쳤고 그래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했던 건데, 22년 3월부터 시행했으면 현재 15개 시도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시행 월수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입법 취지는, 당초에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최소한 5년 정도는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것을 의무화하더라도 맞다고 보여지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지방자치권에 따라서 서울시가 감사를 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위에서 입법으로 그에 반하는

것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명백히 이롭다면 모르겠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침해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저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하는 데 대해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 자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의무화 안 한다고 해서 현재 뭐가 문제인지, 우리 정책수요자인 시민이나 국민이 의무화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산 결정을 할 때 관련한 적법절차는 전부 거쳤습니다. 혁신안도 몇 개인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일부 노조가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정책수요자인 시민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의무화가 시도민에게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협의가 결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이 수정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11조는 우선 이렇게 논외로 하고 30조의2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1항을 파란색으로 구별을 해 놨는데 이 자체를 신설했다는 말인데 아까 개정안 원안이랑 수정안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남인순 위원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남인순 위원 같은 내용이고 아까 제가 더 언급한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중이라서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을 다 봐도 똑같은데 수정안이 뭐가 수정됐다는 건지 몰라서 제가 혹시 못 본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입법공청회를 하는 것은 어떻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분분하고 또 서울시는 나름의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를 포함해서 찬반 하는 국민적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시행한 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바로 이것을 의무화로 가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자라고 하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표결한다? 그러면 소수의견은 전혀 무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에서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한 번, 두 번 심사하고 표결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의사를 개진하나 마나 우리의 심사권은 침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위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원만히 잘 협의를 거쳤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9년도 2월 달에 서울시사서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2년도에 서울시의 회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운영이 비효율하다는 것, 고난도 돌봄서비스가 좀 부족하다는 것 또 주간·야간 돌봄이 되게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23년 9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안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노조원 대상 투표를 5월 13일 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회서비스원에 4개 노조가 있었는데 3개 노조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했는데 1개 노조에서 70% 반대로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5월 22일 날 그 조례가 폐지되게 되고 해산이 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법체계상 시도 출연기관이 이렇게 의무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조에는 이미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9조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자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설립이 잘 됐다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산이 된 사례가 있고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정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례를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왜 이것을 해산하게 됐는지 왜 문제가 된 건지 또 어떤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해산이 된 건지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선우 예.

○남인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차관님이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사무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회서비스원법 조항 안 보셨어요?

법 조항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복지부장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정관이나 규정에 대한 것, 조직개편 등 이런 경영개선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법이 특별법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남인순 위원 나는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진짜 많은 부분을 왜곡시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이 완전히 책임 있는 그런 사무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법. 사회서비스원법이 더 우선하는 법이에요, 지방 출자·출연법.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 출자·출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1년 당시에도 어땠었냐면…… 지방 출자·출연법이 뭡니까? 타당성이잖아.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을 기재부가 했습니다, 사서원 설립하기 이전에, 법 통과하기 전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때 조사가 나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때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도 다 통과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였고요.

지금 자꾸 차관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정말 계속 놀라운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평가요. 서울시 평가는 서울시사서원 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세훈 시장의 보좌관 출신이 내려오셔서, 더구나 그때도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사회서비스 전공자가 아닌 분이 왔어요. 제가 법에다가 분명히 10년 이상 사회서비스 관계된 사람을 기관장으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항인가에 서울시장이 판단해서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전혀 사회서비스 관계자도 아닌 사람을 기관장을 시켰어요. 그분은 내려와서 계속 이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기 위해서 임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경영평가의 지표를 보면 기관장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이 45%입니다. 리더인 사람이 그리고 다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서울시 평가가? 그렇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얘기 좀 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시고……

제가 몇 번 지적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고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라. 서울시의회가 평가한 내용 말고,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했던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반론 제기한 건 하나도 반영을 안 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치사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법 7조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체가 특별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9조에 따르게 되면 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을 할 경우에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이것을 심의 의결토록 여기에 또 하나의 법이, 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르게 되면 위원회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고 타당성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회 적정성이라든지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경우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의료원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지방연구원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강선우 예.

○남인순 위원 아까 갑자기 이게 논의가 되니까 청문회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입법공청

회든 청문회든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정부의 태도가 뭘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아니면, 법에 있는 조항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굳이 입법청문회나 공청회를 해서 뭐가 달라질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 보려고 하면 충분히 서울시가 왜 해산이 됐는지 과정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서울시의회가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그조차도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처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강선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강선우 간사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돼서는 안 되지요.

○최보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서명옥 위원 아니, 어떻게 보건복지위까지 이렇게 같이 하세요?

○소위원장 강선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다수당 마음대로 하세요.

○서명옥 위원 이제 법사위처럼 하세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의논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수진 위원 상식적으로 안 하니까 그렇지요.

○김미애 위원 이게 무슨! 비상식이지요!

○**서명옥 위원** 이게 무슨 상식이에요.

○**이수진 위원**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국민의힘 반대해 갖고 늦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선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수진 위원** 본인들이 반대해 갖고 이 법도 늦게 통과된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21대 때 계시지도 않았으면서!

○**소위원장 강선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서명옥 위원** 사회서비스원 해 본 적 없잖아요!

○**이수진 위원**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데, 국민들이!

○**서명옥 위원**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이수진 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 위원 퇴장)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들, 이것은 시도, 시군구도 법체계상 안 맞습니다. 업무 범위는 법에 규정할 사항입니다. 대령으로 내려갈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이수진 위원** 그러면 없어지지 않게 잘했어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업무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진 위원** 일도 안 해 놓고서는, 복지부가……

○**소위원장 강선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8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 위원** 재의 요구라도 했어야지.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한지아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령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취업제한령 대상기관인 유치원, 학교,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상시적으로 밀접한 접촉하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취업제한령 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좀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취업제한 대상입니까?

○소위원장 강선우 예.

그러면 차관님께서 지금 검토하시는 동안에 방금 저희가 표결로 통과시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여기 보면 제4조 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해서 복지부는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안교육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10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사법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하나의 원인보다는 법령, 제도, 관행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공적 분석·조사 체계 마련을 통한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사안에 따라 사망사건 발생 시점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경찰 등을 중심으로 수사절차로 인해서 개정안에서의 분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관련 입법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23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면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청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친권 일시 정지 청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에 대해서는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친권 상실 등의 청구 요건과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친권 상실 등 청구 활성화를 통한 후견인 선임 등 아동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기아의 후견인 관련하여서도 기아의 특성상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내용상의 수정은 없었고 일부 경미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32쪽입니다.

서명옥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취업제 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등의 사무처리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사무를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행정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체계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굉장히 큰 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내 주신 상황이고 보니까 여기 김미애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서명옥 의원님 다 저희 소위 소속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께서 발의하신 법에 대해서 취지설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저도 발의했을 때 추가로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물론 지금 국힘 위원님들이 갑자기 퇴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다시 모인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법안심사 회의 중에 그냥 갑작스럽게 회의장을 떠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특히나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의견을 개진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52쪽입니다.

최보윤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면서 신분조회 등 조치에 있어서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지자체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아서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아동정보시스템상 그 정보가 기한 없이 보존되는 것도 과잉금지원칙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사례 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례 판단이 늦어질 수 있고 전담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용하신다면 개정안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시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자의 의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시보호조치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 법안은 지난 21대에도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정부도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71쪽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정춘생 의원안·서영석 의원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자립지원대상 아동 범위에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안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추가된 시설별 소관은 복지부 소관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 정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대상 아동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통합적인 자립 지원 실시 및 지원 업무의 부처 간 칸막이 현상 해소로 아동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소관 법령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것인지 각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72쪽에 보시면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는 약간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아동은 사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립지원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1쪽 왼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정신요양, 노숙인 자활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소관에 있는 법률은 각기 개별법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처 간의 합의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그런데 차관님, 그러면 만약에 다른 개별법에서, 개별법에 근거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퇴소 후의 그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

금 갑자기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성폭력 이런 것이 다 와서 저희 자립지원에 이렇게 포괄되게 되어 있거든요.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개별법에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실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복지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총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남인순 위원**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또 다른, 법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마투 사업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만 하는 거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있고 또 다른 부처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다 모아지고 어떤 기준이, 왜냐하면 어떤 아동은 지원이 되고 어떤 아동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책무가 저는 복지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법안에 대한 신중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을 사실은 전담기관을 둬서, 그러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둬서……

또 이게 신설되지 않았나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신설되지 않았나요? 지금 있지 않아요? 복지부가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또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사업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복지부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아동복지법이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있는 것처럼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온 것은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숙인이라든지 또 청소년 같은 경우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처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총괄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대안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지금 남인순 위원님 얘기처럼 아동복지법이 아동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립지원에 대한 법안이 따로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73쪽, 74쪽 보게 되면요 개별법에,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은 73쪽인데요. 53조에 보게 되면 자립생활지원이라든지 또 오른쪽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같은 경우도 32조의3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각기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우리 아동복지법처럼 체계적이고 그렇게는 못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75쪽과 76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별로 퇴소 후에 장애수당도 주고 또 자립생활관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없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빈 공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각 부처, 특히 우리 부도 있고 여가부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을 다루면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여가부를 없애니 마니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여가부에서 제대로 이 안에 대해서 아동보호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대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임광현 의원안·이수진 의원안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각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칭과 관련 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의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강선우 의원안·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안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과의 관계를 보시면 강선우 의원안·이수진 의원안에서는 현행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대체하는 방식이고 임광현 의원안은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존치시키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부 적립금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광현 의원안은 월 10만 원, 이수진 의원안은 월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보호조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매칭 방식이 아닌 국가의 직접 적립 방식을 취해서 보호자가 저축 여력이 없을 경우에도 아동의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출생 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취지의 사업을 중복 규정할 실익은 적으므로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대체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안·이수진 의원안 형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추가 적립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적립금 규모 및 결정 형식이 안별로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동의 자산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균 때로는 7조 원, 때로는 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투입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대상이라든지 지금 금액, 인출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님께서는 어쨌든 아동의 자산 형성 또는 아동수당을 좀 확대 지원해서 어쨌든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스스로의 권리나 스스로가 이후에 미래까지 포함해서 부모가 돈이 있고 부모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사회가 아이를 키워 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복지의 한 형태로서 복지부의 그런 의견 같은 건 없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저출생, 극저출생 때에 또 아동의 자산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빙곤의 사다리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게 많은 예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사회적 합의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산을 형성하게 해 주는 데 있어서 정부가 뭔가 의무감을 갖고 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의지만 가지고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때로는 7조 원, 때로는 15조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 예산, 위원장님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미리, 한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롭거나 뭔 액수를 이렇게 크게 많이 하나 이렇게 놀라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도 아마 검토는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거 때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적어도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거나 뭔가 좀 재원이 마련이 돼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북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들을 보면 캡 이어(Gap year)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다음 전공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좀 다른 경험들을 하잖아요, 꼭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그런 경험들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과 준비를 주는 데 있어서 맨손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좀 자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창의력이 발휘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큰 의미 있는 연구든 아니면 여러 프로그래머든 일단 기회를 주고 믿어 줘야 뭔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려 주지도 않지만 그런 자산조차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도 없고 사실 지자체에 따라서 청년수당 없앤 데도 있고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정부에서 뭔가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청년……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미래 저축…… 차상위까지 해 가지고 11만 명인가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적인 발상인 거예요. 현장에 가 보세요,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다녀보면 참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지자체가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봐 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정부가 한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 정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당장 논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정도가 정부의 수준이라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윤석열 정부가 인구위기에 총력 대응을 한다고 얼마 전에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인구위기 총력 대응을 할 때 해야 되는 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건 이미 정부는 아마 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아동에 대한 자산 형성 사업이 상당히 저출생 인구위기에 있어서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것으로 많이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U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해 왔던 사업이지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 7조씩 듣다고 얘기하는데, 재정 여력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해외에서의 어떤 사례에서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동적 요인이 됐던 사례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자료가 좀 부족해요. 전문위원회에서도 자료 좀 더 추가해 주셔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사실 저희가 지난번 2소위기는 합니다만서도 남인순 위원님께서 인구위기 대응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특히 지난번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요. 또 아동 자산 형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캐나다 이런 데는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동들한테 보편적으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도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낳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애를 낳으려고 하겠지요.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기전 중의 하나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싱가포르는 아동발달 계좌로 0~6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게 잘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재정 부담에 따라서 11년에 종결된 그런 사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외국 사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방향은 일정하게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이 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게 현재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투입에 대한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또 인출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세까지 못 빼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아주영 위원님 하실게요.

○**전진숙 위원** 저는 차관님께 질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하시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 또 일정 정도 측면에서는 재정 소요가 되게 많이 되어야 될 부분에서 방금 말씀 주신 건 사회적 합의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고 이마다 보니까 앞으로 30조를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게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사회적 합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조금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사회적 합의라는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앞단에 있는 것처럼 재정 투입에 대한 지급 대상은 얼마큼 할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그 위에 있는 자립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금액은 과연 얼마쯤 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인출 시기는 어떤 분들은 바로 인출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보게 되면 18세 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진숙 위원** 혹시 국가 정책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법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어차피 이걸 하려면 이런 건 사실은 정하고 가야 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어떤 대국민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연금과 관련해서도 21대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라고 칭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 다시 수정해서 정부의 안을 내놓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말고도 도대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지금 사실 이게 첫 번째 논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저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지금 나온 안을 보면 지금 국가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드는 비용을 7조에서 15조 정도라고 추산을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전체에게 할당이 되는 정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정책을 낼 때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거나 혹은 감액될 때의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저출생 관련해서 많은 비용을 썼지만 사실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고 아마 이런 법안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곧 인구부도 개설할 계획에 계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나 출생률이 어떻게 반등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기조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지금 연금과 건보 같은 큰 덩어리들도 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이며 영국처럼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혹은 감액을 해야 할 때 그때 가서 국민적인 호응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감액이 될 위험이 사실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적어지고 또 이것이 만 18세로 인출 시기를 대

충 보다 보니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만 18세 이후에 고3, 20살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인출시켜서 부모들이 악용을 한다든가 하는 위험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또 유복한 가정 아이들은 이걸 시드머니로 삼아서 더 빈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을 위험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보호종료 청년들에서 이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종료 시기나 인출 시기 그리고 앞으로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에 더 넣을 수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부안에 신중검토에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기재부의 윤허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그러지 아니할 것인지 이런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실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 정부는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디센티브는 제거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아동의 자립 형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간 짧은 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을 함에 있어서 좀 긴 블루프린트에 들어가는 그 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는 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게 저출생 관련된 정책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데 미래 상황이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법안이 대표발의가 돼 있는데 보시면 두 가지 두 가지 쪽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강선우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보면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현행 사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묶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묶이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호자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세제혜택을 받으니까 이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치밀한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회 전문위원도 정리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으로 그러니까 대상에 있어서 나이라든지 나이를 더 줄였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추계를 해 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셔 가지고 그래서 이 대표발의한 각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갖고 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님하고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동 법률안은 복지위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결격사유에 포함되고 있으나 파산선고는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거래상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므로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자의 경제적 간생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 등의 결격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후 경제적 재출발을 돋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상 자격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취업 등에서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결격사유를 축소함에 따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의 도입 취지가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성격이 공적인 영향력이 크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적 직위, 단순사무 종사자에게까지 상위 직위와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기계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은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개별 법률 차원에서 각 직업 및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공익성이나 고도의 신뢰, 경제적 신용이 특별히 요구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연금 가입자 기록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및 지급 등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하

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6쪽부터 20쪽까지 각 법률별로 대상 자격·업무의 내용과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 주신 것처럼 저희는 결격사유의 도입 취지가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공단 임원처럼 재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맞지 않다고 봤고요.

다만 저희가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거기에 관계없이 때문에 이것은 수용 입장이고 나머지는 신중검토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복지부는 그러면 대부분 다 신중검토이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왜냐하면 저희한테 사실은 법 있던 것이 연금법에 따른 것은 연금공단의 임원입니다. 이사와 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장기요양보험법도 운영자가 돼 있고 또 노후준비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적인 상담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하면 복지부가 신중 검토한 것은 다 빼고 일부만 수용한다라는 것이라 수정의견인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저요?

○**남인순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닙니다. 저는 수정의견은 따로 내지 않았고요. 지금 각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복지부에서는 좀 신중한 시각에서 의견을 많이 냈고 식약처는 전체 다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인순 위원** 각각 판단해야 된다고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런데 사실 복지부랑 식약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전향적으로 결격사유에서 빼는 건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거래상의 신뢰 관계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결격사유를 빼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거래관계에서 낳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변호사나 그런 분들도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에 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6쪽의 약사법 보시면 이게 지금 복지부랑 식약처 공동 소관 법률인 건데 식약처랑 복지부 시각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의약품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외품 제조업, 의약품 등 수입업의 경우에 식약처는 전체 다 수용이고요. 복지부 소관인 한약업자,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검토인데……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를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또 의견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식약처와 복지부도 공히 판단을 같이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이수진 위원** 식약처는 다 동의하는데 복지부에서 연금의 임원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법인 임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이런 게 왜 신중검토인지는 궁금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임의 처분이 어렵고 또 파산 재산을 사실은 환가를 해 가지고 다시 채권자한테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 활동보조라든지 또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장기요양재정이라든지 활동보조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받은 돈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채권자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어렵겠다는 식으로 해서 된 것이고요.

또 의약품 도매업자 같은 경우도 자본금을 5억 원 이상을 가져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했기 때문에 자본금 5억 원을 충족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잠깐만요.

이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데 복권 신청을 한 사람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 그 시간 동안 취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라서 복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그 권리지만 그때는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환가해서 계속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수진 위원** 이런 걸 안 하고, 파산선고도 안 하고 오히려 책임을 안 지고 그러는 게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좀 더 비도덕적인 것이지 파산선고가 되고 복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법무부도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파산 신청을 한 때부터 법원의 면책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한 5~6개월의 절차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임원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사회서비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그분들이 안정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실익이 더 큰 건지는 저희가 사실 형량해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분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신중검토 입장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서영석 위원** 일단 관련 법률이 좀 많고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것은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의 의견 갈리는 것을 국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 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줄이고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스템 등으로 대체하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동물을 활용하여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동물의 생명 존중 및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인 특성이 상이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인체에 재현함에 한계가 있다는 과학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면서도 소관과 적용 범위,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및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신설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 제정 논의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2건의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2건 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면서 그 소관을 식약처로 두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에서는 타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다수 조항을 공동 소관으로 조정하였고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와 검증센터는 식약처 소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제정안은 주로 소관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에서 위원회와 센터를 식약처 소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타 부처의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입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일부 조항을 공동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주요 쟁점 조항인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와 검증센터는 식약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거나 범부처 협의체로 변경하는 등 공동으로 운영하고 검증센터는 특정 부처의 산하가 아닌 소관 부처별로 각각 하위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행정안전부는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의 경우 유사·중복 위원회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검증센터의 경우 식약처 소속기관으로 법정화하는 것은 직제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존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남인순 의원안은 식약처 소관으로 한정하면서 위원회와 센터 조항을 삭제하였고, 한정애 의원안은 대부분 공동 소관으로 확대하면서 위원회 대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센터도 공동 소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은 소관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식약처 단독 소관으로서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품목으로 한정할 것인지, 대부분 공동 소관으로서 적용 범위를 모든 품목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제정안을 식약처 단독 소관으로 하면서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타 부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협력하는 체계로 규정하는 반면, 한정애 의원안은 제정안을 대부분 공동 소관으로 하면서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식약처·농식품부·농진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며 기본계획 수립 등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되 기존에 수행하던 소관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식약처 외에도 환경부·농식품부 등 타 부처 소관 품목에도 적용되고 있고 각 부처 소관의 개별 법률에서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소관과 적용 범위는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주의 원칙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와 검증센터의 신설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협의체와 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한정애 의원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검증센터를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그런데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평가연구부에서 2009년부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센터와 한정애 의원안에 따른 센터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처 간 공동으로 또는 부처별로 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소속기관의 설치는 개별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각 부처 자체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총괄 의견입니다. 논의 후에 조문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국내외에서 동물 대상 실험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의 대체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을 촉진하는 두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중에서 대체시험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축적된 전문 역량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식약처 소관 물품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제가 오늘 법안소위에서 발언을 많이 하게 돼서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심사가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앞서 전문위원님 경과보고와 그다음에 부처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난 21대 때는 제가 공동 소관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공동 소관법으로 해서 올렸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법사위에 가서 또 다시 같이 합의했던 분들이 잘 협의를 안 해 주셨어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공동 소관으로 하는 것이 별로 좀, 실제로 실효화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고요.

지금 실험동물이 약 458만 마리가 사용되는데 법적 규제 시험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178마리입니다. 그중에서 식약처가 하고 있는 실험동물이 151만 마리라서 전체의 85%, 사실상 거의 식약처 소관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 식약처가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5년 동안 475억 원의 돈을 이미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부처들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입법 미비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거는 OECD라든가 이런 데 시험 가이드라인에 등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4건이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험 가이드라인에 등재되고 표준화 부분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산이 안 된 이유가 이 법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는 실험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걸 상용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법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러면 각 부처 간에 도움을,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공동 기관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좀 식약처가 먼저 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의무 있는 동물시험 중에 85%를 식약처 규제를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그동안 개발을 해서 OECD 국제기구에 표준시험, 동물대체시험법으로 4건 우리나라에서 등재한 전부를 식약처에서 개발해서 올려놓고 식약처 스스로 이제 고시나 허가 과정에서 이걸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동물대체시험을 향한 식약처의 의지 같은 것들도 담긴다고 생각해서 우선 식약처 중심으로 가고 범부처를 아우르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협의체를 두지 않아도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저희가 대체시험법으로 개발을 해서 OECD에 올린 것들을 다른 부처들도 사실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없더라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건 이제 법에 담는 이런 현실에 기반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센터 규정을 법에 두지 않아도 지금 2009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KoCVAM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센터 규정을 두지 않아도 기운영된 부분의 체계로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400억 원 넘는 R&D를 현재 착수해서 가고 있고 이 건은 저희가 조직으로,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실제 속에서 하나의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고 그동안 해 왔던 이 센터는 지속·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환경부에서도 아마 유사한 관련 법안이, 환경부 관련해서 다뤄야 될 물질에 대해서 동물대체시험 하는 거에 관련한 법안이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약처가 센터가 또 있고 환경부가 센터를 따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의 의견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지금 환경부의 화학물질법에, 이 센터 설치를 화학물질 법에다가 두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마

찬가지로 이것은 개별법에 둘 일이 아니고 조직 또는 직제로 풀 것으로 해서 일단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는 여러 가지 고려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제화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정당한 조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2023년 12월 20일 날 여야 보건복지위원회가 다 있는 상태에서, 물론 좀 구성원은 다르긴 하지만 논의를 해서 그때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의논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오늘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2009년부터 KoCVAM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근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사실상 식약처 소속기관인 평가원에 임의기구로, 임의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KoCVAM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VAM'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불러 왔었습니다. 예전에 실험동물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곳을 이런 이름으로 불러 왔던 거고 법에는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부나 농식품부는 그런 KoCVAM 형태의 센터가 없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그 부분이 합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도 그동안 10여 년 이상 이 평가원 KoCVAM이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다 KoCVAM을 두는 이런 시스템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이 좀 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까지는. 지금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부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아니고 식약처가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게, 다른 범부처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영석 위원** 조문별 검토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4쪽입니다.

 먼저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입니다.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할 때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과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안은 추가로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와 현행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 까지 포함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소관 및 적용 범위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식약처 단독 소관을 전제로 식약처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다부처 공동 소관을 전제로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업무를 관장하는 농식품부·환경부·식약처·농진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소관과 적용 범위는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관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남인순 의원님 안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우선 이 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다음, 18쪽입니다.

먼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수립 주체가 식약처장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정하는 것은 제정안의 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에서 논의했던 소관과 적용 범위가 정해지면 이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자문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7조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자문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 제6조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부처 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부처 간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의체가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협업체계 구축 및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대로 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위원회는 적정한 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적한 대로 협의체와 관련된 것들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일부 복지부 안 수정한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의결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안은 임의규정, 한정애 의원안은 강행규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추가로 동물대체시험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여부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ISP 결과의 검토 없이 특정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 제11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종류의 센터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그 명칭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식약처 센터가 총괄 센터로 지정되어 기능이 확장되고 다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개편되는 것인지, 총괄 센터 산하의 하위 검증지원센터로 분류되는 것인지, 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센터 체계가 마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존 식약처의 센터와 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센터들 간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제정안에 따른 환경부 소관의 하위 검증지원센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지금 수석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센터와 관련돼서는 그 명칭 사용이라든가 신규 설치 등에 관해서는 합의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우선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분야를 명확히 하고 센터는 여기에서 일단 삭제하는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른 부처인 환경부에서 이렇게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식약처의 KoCVAM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부는 독성 물질의 사용 전 단계에서 일부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체시험법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가 표준으로 만드는 그 단계에서만 KoCVAM 단일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oCVAM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별로 있을 일이 아니고 각자는 연구개발이라든가 표준화 노력을 하고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표준으로 하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단일 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부처별 KoCVAM을 반대하는 것이지 부처별 활동 또는 연구개발 노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외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게 유사할 텐데, 부처별로 이렇게 KoCVAM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저희가 국제적으로 KoCVAM과 같이 각 국가별로, 미국은 ICCVAM, 유럽은 ECVAM이라고 돼 있고, 일본은 JaCVAM 이러한 단일 기구들이 있고요. 이 기구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OECD 표준화 시험법 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단일 기구가 대표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조부터 16조까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31쪽입니다.

두 제정안의 12조와 14조는 국제기구의 동물대체시험법 도입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기구가 검증·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맞게 도입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용상 국제협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제12조와 제14조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입니다.

공무원 의제 조항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127조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남인순 의원님 안처럼 전문인력 양성도 식약처장의 책임인 것으로 한정하고, 아까 분산되어 있는 국제협력과 국제기구의 동물시험법 도입 이 조문 합치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잠깐만요.

의결하시기 전에 그러면 조문 한번 정리된 것 보시고 의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남인순 위원 정리된 게 있으세요?

○소위원장 강선우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의결하시려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회 대안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그러면 대안을 일단 좀 보시고 의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코멘트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아마 정리해서 대안이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대안 배포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 벌써 다 했어?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 21대 때 통과됐던 법이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할 거냐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이……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까 조문별로 설명드리고 식약처 의견 말했던 것 그 부분 거의 다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의료기기 장기 추적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이식 이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고 장기 추적 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 제도는 의료기기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식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는 이식 이후 부작용 정보 등 환자와 의료기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장기 추적조사는 3년 한도의 연구과제 형태로 수행되었는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은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발생할 확률이 높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장기 추적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훈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유미 장기 추적조사 도입을 위한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영석 위원 좋은 법안이에요.

○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강선우 예.

○ 이수진 위원 아까 아주영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하셨었는데 저희가 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다음 소위원회에서 나머지 것을 좀 처리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국민의힘 위원들 안 계셔서요?

○ 이수진 위원 예.

○ 소위원장 강선우 그런데 지금 저희 4개밖에 안 남았어요. 22, 23하고 24해서 의사일정…… 조금만 하면 다 해요.

○ 이수진 위원 그래요?

○ 소위원장 강선우 조금만 하면 다 해요. 얼른 합시다.

○ 전진숙 위원 아니, 당사자가 없어서……

○ 소위원장 강선우 얼른 합시다. 여기 의사일정 국힘 위원들도 다 확인하고 나간 거잖아요.

○ 남인순 위원 본인의 발언권을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 소위원장 강선우 예, 다 확인하고 나간 거여서 합시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쪽입니다.

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신설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운용하여 해

당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제도를 삭제하고 이를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하되 정부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도록 역할을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증제를 폐지한다면 부칙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현행법에서 인증신청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명확히 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국내외에서 민간 인증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 영역 이므로 정부 인증을 통한 개입을 유지하는 게 실익보다는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백종현 의원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또 이를 전제로 해서 부칙 수정의견을 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려는데 검토의견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런 유의 인증에 있어서 민간 인증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반면 공공 인증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이것은 정부 측에서 실효성이 낮아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쓴 거고. EU나 이런 외국의 유명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또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인증을 많이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외국 인증을 받아야 해서 국내 인증을 안 받는다는 게 현재 정부 인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인데 사실 국제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코스모스(COSMOS)라고 하는 유기농·천연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외 진출을 위탁 많이 하다 보니 국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같은 천연과 유기농 인증을 주로 코스모스 인증을 받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서 사실 정부 인증이 지금 3분의 1도 채, 인증받은 화장품 숫자가 훨씬 적고……

○**김윤 위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간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부 주도의 인증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다 그런 뜻이신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그런데 국내 회사들은 뭔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게 있다 보니 마치 이게 2개 다를 혹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관행적으로 자꾸 정부 인증을 받으면 부담도 되고 혼란도 있어서 폐지 쪽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차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국제 민간기구가 하는 인증이 우리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저희는 기준 면에서, 평가 기준에서는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있으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희 정부 인증이 경쟁력이 크게 있지는 않다는 객관적 판단입니다.

○이수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국내 판매량 수출을 동시에 하는 화장품의 인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국내 판매만 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모스인지 그 국제 인증 안 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국내에서는 꼭 유기농이나 천연 인증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원료를 썼다거나 천연 원료를 사용했다 이것을 표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금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증마크에 관해서는.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들 유기농이든 그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내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그게 의무는 아니고요.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 받은 화장품이라는 것을 표방하고자 한다면 그때 인증을 요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천연 원료들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실증만 가능하다면 그 광고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이 광고는 지금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영석 위원 그 얘기는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이를테면 천연이고 유기농인데 마치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통되는 화장품은 천연과 유기농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글로벌 인증도, 국내에서 인증을 위탁받아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화장품이라는 인증 로고 같은 것들을 붙이고자 한다면 이 인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유기농 원료를 썼다거나 천연 원료가 들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적 표현이기 때문에 광고로서 표현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서영석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김예지 의원안 계속……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5쪽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화장품 기재 사항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등 표시 의무화입니다.

현행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16쪽입니다.

그런데 용기·포장의 재질에 따라 점자 등의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중소업체의 비중이 약 94%임을 고려할 때 업체의 부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장품의 약 65%가 동시에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 제품에 한글 점자를 표시할 경우 해외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국제조화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개정안에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으로 자율 표시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것을 의무화하기에는 여러 기술적 한계도 있고 또 교역상의 통상 이슈도 될 수 있어서 우선 저희가 자발적 표시를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의무화 단계 필요성은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그런데 식약처에서 오늘 장애인의 날인 건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몰랐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국회에 장애인분들 오셔서 피케팅도 하시고 아까 점심 때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법안이 나올 때는 식약처의 노력 같은 것들, 향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임의조항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면 실제로 기업들이 크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실행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의 대책 같은 것들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 화장품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기왕이면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저희가 포장지에 정해진 표시를 다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동일해서

이것을 QR코드나 e-라벨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e-라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주로 QR코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탑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이 내년 2월에 1차 끝나고 나면 3월부터 시작되는 제2차 시범사업 때는 사실상 이게 가급적 반드시 탑재하도록 유도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밖에 점자스티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는 그동안 식약처의 참여가 좀 적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식약처가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현재 화장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장품 생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계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아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계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저희가 점자를 표기하고 있는 업체나 e-라벨 사업 참여하고 있는 제품들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 이 정신들이 어떻게든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공백 같은 게 적어서 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 표시 현황하고 QR코드 사업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화장품 용기들이 플라스틱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잖아요, 각양각색 크기. 그런데 플라스틱도 저희가 저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화장품 용기 같은 것들이.

저는 용기에 QR코드를 붙이든 뭘 하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용기도 뭔가 통일되게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환경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같아해 나가지 않으면 예산도 각각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통일된 용기에 통일된 안내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 용이하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유미** 저희가 리필 용기 같은 것들을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성격을 담는 여러 정책들을 모아서 화장품 포함해서 용기로 제공이 되는 여러 물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겠습니다.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선우** 마무리해도 되지요?

의사일정 제22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의 수사 특례로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당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수사기법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체계의 특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상호 간 합의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범인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마약범죄, 뇌물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의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등의 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는 합정수사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의유발형 수사를 합정수사로 표현하면서 위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합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회제공형 수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데 위장수사의 잠재적 침익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수사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관련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중독자 중심의 마약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피해신고가 거의 없어 담당 수사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단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에서 신분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수사 방식은 단속과 처벌의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의 신의칙을 위반하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규율하는 방식 및 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마약류의 취급·관리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무부처가 식약처와 복지부인데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마약류 범죄 수사 방식의 특례로서 실제 마약류 범죄의 수사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해경, 관세청 등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수사 주체가 다양하므로 수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표 맙입니다.

이외에도 3건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약류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과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각 개정안은 조문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내용들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신분비공개수사의 개념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신분비공개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비공개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에서 두 수사 방식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그 행위 태양이나 개념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좌측입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무적인 상황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상호 간 합의에 따라 거래되는 등 정형화된 접근 방법이 없고 예측할 수 없어 사전 승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마약류 범죄는 단계별로 분업화된 절차적이 상호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져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마약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마약류의 소지·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신분위장수사의 방식으로서 마약류의 광고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수사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 또는 광고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약류 범죄의 은밀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위장수사에 수반되는 신분증 위변조와 마약류 소지·판매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행위이므로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통제배달 등 일부 위장수사 방식은 판례를 통해 이미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수사절차 및 수사 기간 제한 등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신분위장수사의 방식에 대하여 보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위장수사 중 통제배달은 국제협약과 판례에 의해 현재도 인정되는 수사 방식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승인·허가 절차나 수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범의를 가진 마약류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위장 구매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일종으로서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적법한 수사로 인정되어 실무상 활용 중인 위장수사의 기밀성·신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분위장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경찰청은 수사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때 광고행위를 수반하게 되므로 신분위장수사에 광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최근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 및 전자금융거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주소 생성 및 가상자산 거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 및 사용, 통신비밀보호법상 전자우편주소 등록 및 사용, 인터넷주소법상 인터넷주소 등록 및 사용 등도 신분위장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현재 경찰청뿐 아니라 해경, 검찰, 세관 등에서도 함께 수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주체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도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조문에 사법경찰관리만 명시하는 것이 아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장 신분 제작 등에 적용되는 연계 법을 함께 개정하고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위장수사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의 실무적인 작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잠입수사를 진행하거나 유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장 신분 개설이 필수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장 신분을 활용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여권법 등에 수사 목적 가상 신분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사 목적 판매용 마약류 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연계 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입니다.

14쪽입니다.

신분위장수사 절차와 관련하여 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신분위장수사 사전·사후·연장 허가의 신청 주체에서 사법경찰리를 제외하고 실제 신분위장수사를 사법경찰리가 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명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한편 한지아 의원안에서는 신분위장수사의 총 수사 기간 상한을 3년으로 설정한 반면 백혜련 의원안, 박준태 의원안은 1년으로 하고 있고 백혜련 의원안 제4조의4제3항은 긴급 신분위장수사 시에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세 개정안에서 규율하는 서로 다른 내용의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장기간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고려할 때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상한은 3년으로 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 시에도 수사 기간 연장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 제한입니다.

수집된 증거·자료에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판매상·유통조직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좌측입니다.

세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의 보고와 관련해서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기밀성 유지를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여러 수사기관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한 보고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인지 또는 수사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타 위원회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마약범죄의 단속이나 차단의 효과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소관 등에 관한 전문성이나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무부, 경찰청, 해경 등에서 다양한 보완 의견이나 신중검토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영석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너무 길게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게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이 법이 예방·치료에 관련한 법이었는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을 여기서 담아 내면, 물론 저는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여기 이 법에다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게 먼저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하나하나 조문을 검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법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약처가 이후에 잘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부처한테도 어떤 지침을 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판단이 안 쉽니다.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지금 저희로서는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마약사범에 대한 별 치 규정이 여기에 있고 별도로 형법에 조항이 없다 보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권한 분배를 하거나 지휘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법에 이게 어떻게 담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담기더라도 저희가 총괄 지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강선우** 예.

○**남인순 위원** 이것 내신 의원님인 한지아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다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거야말로 의원님들 계실 때 얘기를 좀 해서 이 법이 여기에 담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식약처가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소위원장 강선우** 식약처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다음에 심사할 때까지, 그 전에라도 가르마 잘 타셔 가지고 복지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예, 이 법안 제출하신 의원님 실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가급적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리된 의견을 저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마약류와 관련돼서 늘 고민이 실제로 주무부처는 식약처인데 유통과 관련된, 대형 마약 유통이 되거나 이런 것은 또 식약처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수사 영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식약처가 어디까지 마약류의 범위를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된 법안도 어디까지를 식약처의 소관으로 봐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법률안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을 전제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대량 유통이 되거나 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것들은 전혀 식약처하고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차제에 그런 게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저희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것이 우려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 법에 충분히 담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적발하고 별칙을 부여해서, 수사해서 재판을 가고 이 부분은 또 수사기관 영역이어서 그 경계와 연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용 마약에 관해서는 수사권을 일부, 병원이라든가 약국 또는 마약류 제조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라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 노력 진행 중인데 그것도 진행 상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선우 김미애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명옥 서영석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전진숙 최보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복지정책관 이상원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